

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·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9. 14.

경제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·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의자: 서민우 의원 등 6명(박종길, 장호섭, 황국주, 박왕규, 박정환)
- 발의일자: 2023. 9. 1.
- 회부일자: 2023. 9. 1.
- 상정 및 의결: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(2023. 9. 14.)

2. 제안이유

- 걷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큰 가운데, 특히 최근에는 맨발로 걷는 것이 심신치유와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면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맨발걷기를 위한 보행로 조성 요구가 많은 상황임.
- 걷는 길 조성 및 관리·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맨발걷기길을 포함하는 다양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구민과 이용자의 건강증진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함.

3. 주요내용

- 걷는 길의 정의에 “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내 산책로 등 보행자를 위해 조성한 길” 추가 및 “맨발걷기길”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(안 제2조)
- 맨발걷기길의 조성 등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4조의2)

- 홍보를 위한 사업에 “맨발걷기길 등 걷기 좋은 길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” 을 추가 규정(안 제7조)
- “명품길” 을 “걷기 좋은 길” 로 용어 변경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
- 비용추계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3. 9. 1. ~ 9. 11.): 의견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 김병욱)

-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맨발 걷기길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안임.
-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
 - 안 제2조에서 “걷는 길” 정의에 “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내 산책로 등 보행자를 위해 조성한 길” 을 추가하였고, 제3호를 신설 “맨발걷기길” 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으며,
 -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 - 안 제7조에서는 걷는 길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맨발걷기길 등 걷기좋은 길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을 추가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8조에서는 “명품길” 을 “걷기 좋은 길” 로 용어를 변경하였음.
-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휴식과 건강을 위해 조성하는 “걷는 길” 에 “맨발 걷기길” 을 추가하고 다양한 걷는 길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맨발걷기 등 보행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관련법령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